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4)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한 두 환
여강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나주인씨는 자신의 반려견 응순이가 다음, 다뇨에 식욕부진, 구토 증상을 보이자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 동물병원을 내원했다. 응순이는 급성신부전을 앓고 있었고 혈청검사에서는 저알부민혈증, 방사선과 초음파 검사에서는 신장이 비대한 것이 나타났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명의 수의사는 이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구토가 있는 것만을 보고 흔한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수액요법과 항구토제를 투여했을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응순이의 급성신부전은 점차 만성화되었으며, 나주인씨는 응순이의 치료비로 총 100만원을 지출했다. 수회 치료를 받아도 응순이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나주인씨는 근처 이실력 수의사가 운영하는 '실력 동물병원을 찾았다. 이실력 수의사는 응순이의 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진단했다. 응순이는 상태가 악화되어 기대수명이 2년 정도 예상되었고 지속적인 고통압치로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실력 수의사는 응순이가 급성신부전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진료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주인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있다면 얼마를 배상해 주어야 할까?

오진 등 의료과실은 수의사로써는 가장 뼈아픈 일이지만 비슷한 임상증상들을 보고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요즘의 반려견 보호자들은 의료지식도 상당하고 정보공유도 활발하다. 더욱이 반려견 카페 등을 통해 의료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의사들도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지고 있다.

1. 수의사의 의료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수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료과실의 기준은 무엇일까? 수의사의 의료과실이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오진이라 함은 특정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인데, 오진이라고 무조건 의료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오진으로 인해 환축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하였

다면 그 책임은 의사에게 있겠지만,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의료과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축의 보호자가 진단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은 경우나 현재 수의학의 의학적 수준상 정확한 진단이 곤란한 경우, 질병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할 수 없었던 특이체질인 경우는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매우 희귀한 질병인 경우,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고에서의 구급상황인 경우, 기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오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의학의 기술적 제한 때문에 이를 의료상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실이 없는 진단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후속 조치로서 수의사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면, 어떠한 진료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 중 최선의 진료방법만이 정당한 것이고 다른 조치들은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급성신부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청검사와 영상검사를 면밀히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서 급성신부전증을 급성위염으로 오진하였다. 그리고 그 진단 과정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김명의 수의사의 경우는 오진에 따른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2. 의료과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우리 법제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가 수의사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환축의 보호자가 수의사가 오진을 했다거나 진료 과정에서 실수, 착오가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여서 수의사만이 의료행위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난해하여 수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법원은 사람의 의료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측이 의

사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 증명을 해야 하는 정도를 대폭 감경하고 있다. 환자가 이미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그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의료행위 이전에는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이제는 의사가 그 부작용이 자신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아직 수의사를 상대로 이러한 증명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힌 법원의 판결은 없었지만, 환축의 보호자가 어느 정도로 수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나주인씨가 이실력 수의사 등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아 김명의 수의사가 제대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한다면 김명의 수의사의 의료과실은 인정될 것이다. 실제 나주인씨는 소송과정에서 김명의 수의사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병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김명의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3. 김명의 수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1) 나주인씨가 김명의 수의사에게 지불한 치료비

김명의 수의사는 잘못된 진료를 하였고 이로 인해 나주인씨는 불필요한 치료비를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치료비로 지급받은 100만원에서 꼭 필요했던 진료과정(혈청 검사비, 초음파검사비, 방사선검사비)의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나주인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2) 나주인씨가 앞으로 응순이의 치료에 쓰게 될 치료비

김명의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응순이의 상태는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하였고, 고혈압치료 등 만성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이런 경우, 응순이의 향후 만성신부전 치료비는 김명의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보통의 배상액 계산방법은 나주인씨가 '실력 동물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치료에 지불한 평균 치료비를 계산해서, 응순이의 기대 수명인 향후 2년 동안 지불할 치료비를 손해로 인정하게 된다.

(3) 나주인씨에 대한 위자료

사례와 같은 경우, 법원은 응순이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나주인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응순이의 만성신부전 치료로 인해 정신통을 겪을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나주인씨의 정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할 것이다.

그런데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위의 나주인씨가 김명의 수의사에게 지불한 치료비나 앞으로 만성신부전에 지불할 치료비는 일정한 계산을 해보면 객관적인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나주인씨의 정신적인 고통이란 객관적 수치로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자료의 경우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선에서 위자료액을 정해줄 수밖에 없다. 얼마를 위자료액으로 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증명이 어려워져서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는 법원이 위자료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위자료 산정에는 그 때 그 때의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사안이었지만, 판례 중에는 수의사가 방광염을 오진하여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그 사건에서는 200만원을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각 사건의 제반사정이 상이하므로 위자료 액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할 일이다. 따라서 만일 김명의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 응순이가 바로 사망했다면, 응순이의 추가적인 치료비는 필요치 않아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인 반면, 법원은 나주인씨에게 위자료를 더 많이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과실을 위계로 숨기려는 것은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의료과실은 수의사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고, 사소한 실수로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거짓으로 의료과실을 숨기려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실제 어떤 사건의 경우는 피소를 당한 수의사가 의료기록을 당초부터 제대로 진단하여 처치한 것으로 사후에 바꾸었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진단하여 처치하였다고 증언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고 보호자에게 추가적인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다. 보호자의 감정적인 반응에 소송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냉정함을 잃을 시에는 이길 소송도 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

(칼럼 소재 확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률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시십시오. 상담글에 메일로 답변도 드리고, 익명의 칼럼 소재로서 실고자 합니다. 어떠한 소재라도 괜찮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